

충청북도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안 심사 보고서

내부위원회
1993. 12. 1.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회부일자

- . 제출일자 : 1993년 11월 17일
- . 회부일자 : 1993년 11월 17일

다. 상정일자 : 제 97 회 정기회

- . 제 6 차 내부위원회 (1993. 12. 1.)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내무국장 조영창)

가. 제안이유

- 사회기능의 세분화. 전문화 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지방행정인의 양성은 물론, 관리직 공무원의 정책입안 및 행정관리 역량을 제고시켜 "도정의 경영화"를 효율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민주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 날로 고급화. 다양화 되어가고 있는 주민의 욕구충족
- 연구하고 공부하는 공직풍토 조성과 공직자의 사기양양 및 관. 학 협동 체제 구축을 통한 도정발전을 도모코자

- 대학원에 진학하여 수학하는 공무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위함

나. 주요골자

- 도내대학원 야간과정에 수학케 할 분야는 지방행정(지방재정), 지역 및 산업개발, 기타지방행정관련 분야로 정하고, 장학생 선발은 입학 및 학업 성적이 우수한자로 함 (안 제2조 내지 제4조)
- 장학금지급액은 해당 대학원이 정하는 등록금전액으로 하되, 도재정상 꾸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금의 일부만을 지급하며 지급 기간은 석사과정은 2년6개월, 단기과정은 1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 장학금을 지급받은 공무원은 품위유지 및 학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의장학금을 지급받아 수학한 기간은 2배이상의 기간동안 도에 의무 근무토록하여야 하고, 재학중 성적이 불량하거나 졸업후 근무기간을 미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기지급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시킬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내지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요지

(전문위원 윤태무)

충청북도 공무원 장학금 지급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어감에 따라 지방행정의 기능과 역할이 점차 증대 되어가고 있고,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민주봉사 행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행정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모두가 전문화된 지식과 우수한 직무능력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긴요한 과제이므로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직무수행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는 공직풍토조성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대 대학원에의 공무원 위탁교육은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도정발전에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충청북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 대학원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도 소속공무원 대상자 중 지방행정분야, 지역개발분야, 산업개발분야, 기타 지방행정 관련분야의 대학원석사과정 및 단기과정에 입학시켜 석사과정은 2년6개월, 단기과정은 1년동안 대학원에서 매학기 중특금으로 정하는 금액의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려는 내용으로서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을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육성 측면에서 고려해 볼때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수정안 요지 :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 제1조(목적)조문중

"공무원에 대한 대학원위탁교육"을 "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대학원위탁교육"으로 하고, 제2조(정의)조문 중 "도소속공무원 중 대상자를 대학원 석사과정"을

"도 소속공무원 중 대상자를 국내외 대학원 석.박사 과정"으로 하며, 제5조(장학금의 지급)제1항중 "매학기 등록금으로 정하는 금액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도재정상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때에는 등록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를 "매학기 등록금으로 정하는 금액 전액과 국외훈련의 경우에는 체재비 등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다만, 도재정상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때에는 등록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문안 추가하여 국내 야간연수 뿐만아니라 국외연수 까지로 확대하여 다가오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전문인 육성의 장을 열기위함.

7. 심사결과 : 수정동의안 7인중 7인 찬성으로 제1조(목적)조문중
"공무원에 대한 대학원위탁교육"을 "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대학원위탁교육"으로 하고, 제2조(정의)조문 중 "도소속공무원 중 대상자를 대학원 석사과정"을 "도 소속공무원 중 대상자를 국.내외 대학원 석.박사 과정"으로 하며,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1항중 매학기 등록금으로 정하는 금액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도재정상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때에는 등록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를 "매학기 등록금으로 정하는 금액 전액과 국외훈련의 경우에는 체재비등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다만, 도재정상 곤란한 사유

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 삽입하고 도원안대로 의결

8.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9. 기타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
- . 신구조문 대비표
- .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수정안